

제213회 여수시의회 임시회에서 의결된 여수시 도시
공원 및 녹지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를 이에 공포한다.

2021년 10월 / 일

여 수 시 장 권오봉



여수시 조례 제1668호

붙임 여수시 도시공원 및 녹지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 1부.

여수시 도시공원 및 녹지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

여수시 도시공원 및 녹지 등에 관한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33조제1항 단서 중 “공원관리청”을 “시장”으로 한다.

제38조제3항 중 “공원관리청”을 “시장”으로 한다.

제39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중 “면제할 수 있다”를 “면제한다”로 하고, 같은 항 제5호 및 제6호를 각각 제6호 및 제7호로 하며, 같은 항에 제5호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5.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가.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86조 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나. 「독립유공자 예우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5조에 해당하는 사람

다. 「참전유공자 예우 및 단체 설립에 관한 법률」 제2조제2호에 해당하는 사람

라. 「5. 18민주유공자예우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52조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마. 「특수임무유공자 예우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

58조에 해당하는 사람

바. 「의사상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7조의2 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사. 「국군포로의 송환 및 대우 등에 관한 법률」 제2조제5호에 따른 등록포로 및 같은 조 제3호에 따른 억류지출신 포로가족

아. 「고엽제후유증 등 환자지원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 제8조의3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제39조의2 및 제39조의3을 각각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제39조의2(요금의 반환) ① 요금(제2조제6호 및 제7호에 따른 사용료와 점용료를 말한다. 이하 같다)의 반환 기준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다음 각 목의 경우에는 전액 반환

가. 천재지변 또는 불가항력 등의 사유로 취소한 경우

나. 예약한 당일 취소하거나 사용일 7일 전까지 취소한 경우

2. 사용일 6일 전부터 3일 전까지 취소한 경우 : 요금의 100분의 10을 공제한 후 나머지 금액 반환

3. 사용일 2일 전부터 1일 전까지 취소한 경우: 요금의 100분의 30을 공제한 후 나머지 금액 반환

4. 사용일 이후 취소한 경우: 반환 불가

② 이미 납부된 요금은 사용수익허가 또는 점용허가 기간 내에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 전부 또는 일부를 반환할 수

있다.

1. 천재지변 또는 시장이 공익상 필요에 따라 허가를 취소하거나 허가내용을 변경한 경우
2. 실제의 공원 점용 면적이 점용허가 면적보다 과소하거나 요금산정의 착오 등 환불이 불가피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제39조의3(도시공원 부지사용계약) ① 법 제12조의2제2항에 따라 도시공원 부지사용계약(이하 “공원부지사용계약”이라 한다)의 체결 등에 필요한 사항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공원부지사용계약에는 공원부지사용계약의 대상이 되는 토지의 구역(주소·소유자·면적 및 지목을 포함한다)을 표기
2. 공원부지사용계약의 최초 계약기간은 3년 미만으로 하고, 계약의 만료 및 갱신은 다음 각 목에 따를 것

가. 시장 또는 토지소유자는 계약의 만료 및 갱신 여부를 만료일 전년도 5월 31일까지 계약 상대방에게 통지

나. 가목에 따라 통지를 받은 토지소유자 또는 시장은 통지를 받은 날부터 30일 이내에 계약의 만료 및 갱신 여부를 회신

다. 가목에 따른 통지가 없는 경우에는 만료일 다음 날부터 직전 계약기간과 같은 기간으로 계약이 갱신. 다만, 시장과 토지소유자가 합의한 경우에는 계약기간을 조정할 수 있다.

라. 계약의 변경은 시장과 토지소유자의 요청에 따라 협의하여 결정

3. 부지사용료의 산정방식은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 제71조를 준용. 다만, 계약의 당사자 사이에 다른 방식으로 부지사용료를 산정하는 것으로 합의한 경우에는 합의한 방식을 적용한다.
4. 시장은 제3호에 따라 산정한 부지사용료를 토지소유자의 청구에 따라 지급
 - 가. 토지소유자는 계약한 날부터 1년 단위(1년 미만의 계약인 경우에는 그 계약기간을 말한다)로의 부지사용료 지급을 청구
 - 나. 시장은 지급 청구를 받은 날부터 30일 이내에 토지소유자가 지정하는 은행계좌에 현금으로 입금
 - 다. 가목 및 나목에 따른 부지사용료 지급시기와 방법은 토지소유자와 시장이 협의하여 조정
5. 공원부지사용계약 부지의 공원시설은 시장이 설치 및 관리. 다만, 시장과 토지소유자가 합의한 경우에는 합의한 방식을 적용한다.
6. 공원부지사용계약의 변경은 시장과 토지소유자가 협의하여 변경할 수 있으며 계약의 해지 또는 계약기간 변경은 제2호의 기준에 적합할 것
7. 공원부지사용계약에 대하여 계약당사자가 계약내용을 위반한 경우에는 다음 각 목의 조치를 취할 것
 - 가. 1개월 이내에 계약내용을 이행하도록 요청
 - 나. 가목에 따른 적정한 이행요청을 2회 이상 하였음에도 불구하고

고 계약의 위반상태가 지속될 경우에는 계약이행을 하도록 필요한 조치를 마련하거나, 계약위반을 이유로 계약을 해지 할 수 있음

다. 나목에 따라 소요되는 비용은 본 계약을 위반한 자가 부담

8. 해당 부지에는 사용 또는 수익을 목적으로 하는 권리가 설정되어 있지 않을 것. 다만, 공원부지사용계약에 대한 이해관계자의 동의가 있는 경우는 그렇지 않다.

9. 토지소유자는 도시공원의 설치 전까지 자기 소유의 공원부지사용 계약 토지를 시장과 협의하여 사용할 수 있음

② 제1항에서 정한 사항 외에 공원부지사용계약의 방법 및 내용은 규칙으로 정할 수 있다.

부 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신 · 구조문대비표

현 행	개 정 안
<p>제33조(도시공원 및 공원시설의 개방) ① 공원 및 공원시설은 모든 시민이 편리하게 이용할 수 있도록 개방·관리한다. 다만, <u>공원관리청</u>이 필요한 경우에는 별도 이용시간을 정할 수 있다.</p> <p>② (생략)</p> <p>제38조(수익목적 사용료 등의 징수) ①·② (생략)</p> <p>③ 제2항에 따라 발행된 관람권은 <u>공원관리청</u>의 검인을 받아야 한다.</p> <p>제39조(요금의 감면) ① 시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공원 입장자에 대하여 입장료를 <u>면제</u>할 수 있다.</p> <p>1. ~ 4. (생략)</p> <p><신설></p>	<p>제33조(도시공원 및 공원시설의 개방) ① ----- ----- -----.</p> <p>-- <u>시장</u>----- ----- ---</p> <p>② (현행과 같음)</p> <p>제38조(수익목적 사용료 등의 징수) ①·② (현행과 같음)</p> <p>③ ----- -- <u>시장</u>----- ---</p> <p>제39조(요금의 감면) ① ----- ----- -----</p> <p>---- <u>면제</u>한다.</p> <p>1. ~ 4. (현행과 같음)</p> <p>5. <u>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 하는 사람</u> <u>가.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86조제1항 각 호의</u></p>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
람

나. 「독립유공자 예우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5조에 해
당하는 사람

다. 「참전유공자 예우 및 단
체 설립에 관한 법률」 제
2조제2호에 해당하는 사
람

라. 「5.18 민주유공자예우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 시
행령」 제52조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
는 사람

마. 「특수임무유공자 예우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58조에 해당하
는 사람

바. 「의사상자 등 예우 및 지
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7조의2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
람

사. 「국군포로의 송환 및 대
우 등에 관한 법률」 제2
조제5호에 따른 등록포로

<p>5.·6. (생략)</p> <p>② (생략)</p> <p><신설></p>	<p><u>및 같은 조 제3호에 따른</u> <u>역류지출신 포로가족</u> 아. 「<u>고엽제후유증 등 환자</u> <u>지원 및 단체설립에 관한</u> <u>법률</u>」 제8조의3 각 호의 <u>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u> <u>람</u></p> <p><u>6.·7. (현행 제5호 및 제6호와</u> <u>같음)</u></p> <p>② (현행과 같음)</p> <p><u>제39조의2(요금의 반환) ① 요금</u> <u>(제2조제6호 및 제7호에 따른</u> <u>사용료와 점용료를 말한다. 이</u> <u>하 같다)의 반환 기준은 다음</u> <u>각 호와 같다.</u></p> <p><u>1. 다음 각 목의 경우에는 전액</u> <u>반환</u></p> <p><u>가. 천재지변 또는 불가항력</u> <u>등의 사유로 취소한 경우</u></p>
	<p><u>나. 예약한 당일 취소하거나</u> <u>사용일 7일 전까지 취소한</u> <u>경우</u></p> <p><u>2. 사용일 6일 전부터 3일 전까</u> <u>지 취소한 경우 : 요금의 100</u> <u>분의 10을 공제한 후 나머지</u> <u>금액 반환</u></p>

3. 사용일 2일 전부터 1일 전까
지 취소한 경우: 요금의 100
분의 30을 공제한 후 나머지
금액 반환

4. 사용일 이후 취소한 경우: 반
환 불가

② 이미 납부된 요금은 사용수
익허가 또는 점용허가 기간 내
에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경우
에는 그 전부 또는 일부를 반환
할 수 있다.

1. 천재지변 또는 시장이 공익
상 필요에 따라 허가를 취소
하거나 허가내용을 변경한
경우

2. 실제의 공원 점용 면적이 점
용허가 면적보다 과소하거나
요금산정의 착오 등 환불이
불가피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제39조의3(도시공원 부지사용계
약) ① 법 제12조의2제2항에 따
라 도시공원 부지사용계약(이
하 “공원부지사용계약”이라 한
다)의 체결 등에 필요한 사항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공원부지사용계약에는 공원

<신 설>

	<p><u>부지사용계약의 대상이 되는 토지의 구역(주소·소유자·면적 및 지목을 포함한다)을 표기</u></p>
	<p>2. <u>공원부지사용계약의 최초 계약기간은 3년 미만으로 하고, 계약의 만료 및 갱신은 다음 각 목에 따를 것</u></p> <p>가. <u>시장 또는 토지소유자는 계약의 만료 및 갱신 여부를 만료일 전년도 5월 31일까지 계약 상대방에게 통지</u></p> <p>나. <u>가목에 따라 통지를 받은 토지소유자 또는 시장은 통지를 받은 날부터 30일 이내에 계약의 만료 및 갱신 여부를 회신</u></p> <p>다. <u>가목에 따른 통지가 없는 경우에는 만료일 다음 날부터 직전 계약기간과 같은 기간으로 계약이 갱신 다만, 시장과 토지소유자가 합의한 경우에는 계약기간을 조정할 수 있다.</u></p> <p>라. <u>계약의 변경은 시장과 토</u></p>

	<p><u>지소유자의 요청에 따라 협의하여 결정</u></p> <p>3. <u>부지사용료의 산정방식은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 제71조를 준용. 다만, 계약의 당사자 사이에 다른 방식으로 부지사용료를 산정하는 것으로 합의한 경우에는 합의한 방식을 적용한다.</u></p>
	<p>4. <u>시장은 제3호에 따라 산정한 부지사용료를 토지소유자의 청구에 따라 지급</u></p> <p>가. <u>토지소유자는 계약한 날 부터 1년 단위(1년 미만의 계약인 경우에는 그 계약기간을 말한다)로의 부지사용료 지급을 청구</u></p> <p>나. <u>시장은 지급 청구를 받은 날부터 30일 이내에 토지소유자가 지정하는 은행계좌에 현금으로 입금</u></p> <p>다. <u>가목 및 나목에 따른 부지사용료 지급시기와 방법은 토지소유자와 시장이 협의하여 조정</u></p>

	<p>5. <u>공원부지사용계약 부지의 공 원시설은 시장이 설치 및 관 리. 다만, 시장과 토지소유자 가 합의한 경우에는 합의한 방식을 적용한다.</u></p> <p>6. <u>공원부지사용계약의 변경은 시장과 토지소유자가 합의하 여 변경할 수 있으며 계약의 해지 또는 계약기간 변경은 제2호의 기준에 적합할 것</u></p> <p>7. <u>공원부지사용계약에 대하여 계약당사자가 계약내용을 위 반한 경우에는 다음 각 목의 조치를 취할 것</u></p>
	<p>가. <u>1개월 이내에 계약내용을 이행하도록 요청</u></p> <p>나. <u>가목에 따른 적정한 이행 요청을 2회 이상 하였음에 도 불구하고 계약의 위반 상태가 지속될 경우에는 계약이행을 하도록 필요 한 조치를 마련하거나, 계 약위반을 이유로 계약을 해지 할 수 있음</u></p> <p>다. <u>나목에 따라 소요되는 비 용은 본 계약을 위반한 자 가 부담</u></p>

8. 해당 부지에는 사용 또는 수익을 목적으로 하는 권리가 설정되어 있지 않을 것. 다만, 공원부지사용계약에 대한 이해관계자의 동의를 있는 경우는 그렇지 않다.

9. 토지소유자는 도시공원의 설치 전까지 자기 소유의 공원부지사용계약 토지를 시장과 협의하여 사용할 수 있음

② 제1항에서 정한 사항 외에 공원부지사용계약의 방법 및 내용은 규칙으로 정할 수 있다.